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1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3명(5급 2명, 6 1명)은 인사혁신처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예방 등 공무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및 5급 역량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재해보상 심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국민추천제를 통한 공직후보자 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헌법·인공지능 등에 대한

인재개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직자 가상 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9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운영
- 제13조제3항제1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5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운영

제4장의2(제25조의2 및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제25조의2(직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의3(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제3항 후단 중 “28명”을 “30명”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조직”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00”을 “414”로 하고, 일반직 계 “399”를 “4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3”을 “38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90”을 “1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8”을 “19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4”를 “5”로, 3급 또는 4급 이하 “158”을 “163”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재해보상정책관 1개 담당관	3명
2) 인사혁신국 1개 과	3명
3) 인사관리국 1개 과	3명
4) 윤리복무국 1개 과	6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② (생 략)	제2조(소속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 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 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생 략)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현 행과 같음)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 조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 금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u><삭 제></u>
7. ~ 20. (생 략)	7. ~ 20.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재채용국) ①·② (생 략)	제11조(인재채용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 및 운영	7.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역량 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

8. ~ 12. (생략)
 제13조(인사관리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 1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운영
 8. ~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사관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7.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6. (현행과 같음)
 18. 5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
제도의 연구·운영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제25조의2(직무)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
 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
 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한다.

제25조의3(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
 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
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
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④ (생략)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0조(한시정원) 공직자 가상자
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
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30명 -----

-----.

④ (현행과 같음)

제7장 한시조직

<삭 제>

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
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
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0</u>	<u>414</u>	+14
•	•	•	
•	•	•	
일반직 계	<u>399</u>	<u>413</u>	+1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73</u>	<u>387</u>	+14
•	•	•	
•	•	•	

[별표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0</u>	<u>196</u>	+6
·	·	·	
·	·	·	
일반직 계	<u>188</u>	<u>194</u>	+6
고위공무원단	<u>4</u>	<u>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8</u>	<u>163</u>	+5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9